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20	제 정 일 자	2022.01.27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0	쪽 번 호	1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1 장 총칙	제 2 조 정의	■ 용어 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3 조제 1 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제 1 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 84 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 조제 4 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 2 조제 1 호의 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부터 제 6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20	제 정 일 자	2022.01.27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0	쪽 번 호	2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2 장 중대산업재해 법제 4 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목표설정	법제 4 조①1 호 영 4 조 1 호	사업/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경영기획 및 검토 절차서에 따라 안전보건목표 수립 관리		▪ 경영기획 및 검토 절차서 ▪ 안전보건목표	
	전담조직 설정	법제 4 조①1 호 영 4 조 2 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 명 이상인 사업/사업장 나. 공시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 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당사는 500 인 이하 기업으로써, 해당되지 않음		해당되지 않음	
	위험성평가	법제 4 조①1 호 영 4 조 3 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 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험성평가 절차서에 따라 연 1 회 위험성평가 및 수시평가가 실시 및 대표이사 보고		▪ 위험성평가 절차서 ▪ 위험성평가 자료(수시포함)	
	예산편성 및 집행	법제 4 조①1 호 영 4 조 4 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 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 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 3 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 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경영기획 및 검토 절차서에 따라 안전보건목표 수립시,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 경영기획 및 검토 절차서 ▪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예산수립현황)	
	업무수행 지원	법제 4 조①1 호 영 4 조 5 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 회 이상 평가·관리 할 것	경영기획 및 검토 절차서에 따라 안전보건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 지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 향도 반기 1 회 점검		▪ 중대 산업재해관리 지침서 ▪ 반기 점검표	
	전문인력배치	법제 4 조①1 호 영 4 조 6 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 건의를 배치할 것.	□ 자체선임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에 반영		▪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 관련 인원 선임기록	
	종사자 의견청취	법제 4 조 1 호 영 4 조 7 호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 련·이행 여부 반기 1 회이상 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 1 회 반기 1 회 점검 실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침서 ▪ 반기 점검표	
	중대산업재해 절차수립 및 점검	법제 4 조①1 호 영 4 조 8 호	다음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 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 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관련 절차에 반영 반기 1 회 점검		▪ 재해조사 및 보고 절차서 ▪ 비상사태관리 절차서 ▪ 반기점검표	
	도급,용역,위탁업체 관 리	법제 4 조①1 호 영 4 조 9 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다음 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 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 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 한 기준	피도급업체안전관리 지침서 및 작업허가 절차서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업체 관리		▪ 피도급업체안전관리 지침서 ▪ 작업허가 절차서 ▪ 작업허가서 ▪ 협의체 회의록 ▪ 수급인 안전보건점검표 ▪ 작업장합동안전보건점검표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20	제 정 일 자	2022.01.27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0	쪽 번 호	3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2 장 중대산업재해 법제 4 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	법제 4 조①2 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는 " 재해조사 및 보고 절차서 "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 재해조사 및 보고 절차서 ▪ 재해조사보고서 ▪ 산업재해조사보고서	
	관할관서 명령 이행	법제 4 조①3 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관할관서 명령 접수 시, 적극 대응		▪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시행 명령서 ▪ [종합.안전.보건]진단명령서	
	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법제 4 조①4 호 영 5 조②1 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 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법규관리 및 준수평가 절차서에 따라 법규준수여부 점검 실시 또는 위탁업체에 이해여부 점검 업무 위탁하여 관리		▪ 법규관리 및 준수평가 절차서 ▪ 준수평가표 - 내부심사점검표 - 위탁기관 점검표	
	상기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실시	법제 4 조①4 호 영 5 조②2 호	제 1 호에 따른 점검/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준수평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실시 1) 개선에 요구되는 예산 편성/집행 및 개선 실시 2) 개선결과 확인		점검결과 개선 기록	
	교육실시 여부 점검	법제 4 조①4 호 영 5 조②3 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 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1. 특별교육 실시 1) 교육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교육훈련 이행상태 점검(1 회/반기) 1) 점검/평가자 : CSO 2) 평가방법 : 첨부 중대재해처벌 체크리스트 활용		▪ 특별안전보건교육 결과기록 ▪ 반기점검표	
	상기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실시	법제 4 조①4 호 영 5 조②4 호	제 3 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상기 점검결과 미 이수자는 반드시 추가교육 실시		▪ 특별안전보건교육 결과기록	
제 2 장 중대산업재해 법제 5 조 도급, 용역, 위탁업체 관리	도급, 용역, 위탁업체 관리	법제 5 조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법인/기관이 제 3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 3 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 4 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법인/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내 피도급업체와 협의하여 관리 범위 결정		좌동	
법제 8 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법제 8 조 시행령제 6 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20 시간)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시 교육수료 1) 교육시간 : 20 시간 2) 수강자 :대표이사		교육수료증	
제 3 장 중대시민재해	적용제외	적용제외	당사는 제조업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20	제 정 일 자	2022.01.27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0	쪽 번 호	4 / 4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가타 법규 내용 요약] 제 2 장 중대산업재해 제 6 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제 4 조 또는 제 5 조를 위반하여 제 2 조제 2 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 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 4 조 또는 제 5 조를 위반하여 제 2 조제 2 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 년 이내에 다시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제 7 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 6 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6 조제 1 항의 경우: 50 억원 이하의 벌금 2. 제 6 조제 2 항의 경우: 10 억원 이하의 벌금	[가타 법규 내용 요약] 제 4 장 보칙 제 15 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 1 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	--